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회계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10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96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회계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하여” 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지연배상금률을 준용하여”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8조 중 “「화성시 재무회계규칙」” 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39조 중 “「화성시 재무회계규칙」” 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